

‘모두를 위한 관광’과 관광 법규의 제고 :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중심으로

임지은*

국제사회는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개인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관광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장애 패러다임이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면서 관광 분야에서 역시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최근 채택된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Tourism for All - 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의 개념에 잘 나타난다. 본 연구는 국내 관광 관련 법규들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해야한다고 보고, 장애인 관광향유권 향상을 위해 변화한 과정을 고찰하여 통합적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 분야의 국내·외 학술자료들과 국내 관광정책의 장애인 관광향유권 관련 논점을 고찰하고 ‘모두를 위한 관광’에서 함의한 관광환경의 보편성과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분석 틀로 제출하였다. 또한 국내 관광법규들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모두 조사하여 ‘모두를 위한 관광’의 의미를 반영하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6개 조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1개 조항, 한국관광공사법의 1개 조항과 국내 시·군·구 조례 및 시·도 조례로 19개 지방자치단체의 19개 자치법규에 나타난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기본법의 보편성 천명과 관광진흥법의 사회적 인식변화 속도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향유권의 형평성 가치 실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와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재해석을 공론화하여 국내 관광학계의 편견 해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무장애 관광, 장애인 관광향유권, 관광 법규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I. 서론

국제사회는 세계관광기구(UNWTO: United Nation World Tourism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개인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관광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 마닐라 총회에서 관광접근성 문제를 최초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인간 삶의 질과 인류 발전의 중요한 수단인 관광에 있어서 비차별적인 접근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되었다(UNWTO, 1980). 이렇듯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장애인 관광향유권 의제를 비장애인 위주로 수립해왔던 관광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였지만, 차별을 지양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UNWTO의 ‘비차별적 접근 권고’와 더불어 관광학계에서는 장애인이 여행하는 동안 경험하는 어려움을 장애인 관광제약으로 연구하며(Smith, 1987; MeKercher, Packer, Yau, & Lam, 2003),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장애유무와 관계없는 관광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여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의 ‘장애인 관광(tourism for the disabled)’은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 ‘포용 관광(inclusive tourism)’의 일환으로 이 인식되기도 하는 등 장애인을 관광기회를 갖기 어려운 집단으로 대상화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오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관광기회가 적었던 이유와 제약요인을 구체화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다.

이후 사회적으로 장애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관광 분야에서도 장애인을 관광기회를 시혜해야하는 집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관광활동 가능하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과거 인간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를 개별적 모델(The individual model) 또는 의료적 모델(The medical model)에 의해 이해하여(Nicolaisen, Blichfeldt, & Sonnenschein, 2012) 장애를 개인 당사자의 문제로 치환하며, 재활이나 치료를 통해 개인의 사회활동력을 높여야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은 개인의 장애(disability)를 감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barrier)가 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논한다. 사회적 모델로 장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암스테르담 조약 중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발표하는(EU, 1997) 등 국제사회가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보장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에게 방해가 되는 물리적·제도적 장벽 제거의 의미가 관광분야에 확산되어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 개념이 통용되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9년 채택된 ‘세계관광윤리헌장(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은 ‘모든 사람은 관광을 통해 체험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UNWTO, 1999)으로 국제사회의 관광정책에 사회적 장애모델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대한 입장은 더욱 발전하여 최근 채택된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Tourism for All - 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의 개념에 잘 나타난다. UNTWO(2016)는 모두를 위한 관광에 있어서 접근가능한 관광이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따라 관광 환경과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정책은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사회적 장애모델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필요 없는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장애인 관광’이나 ‘무장애 관광’보다 발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관광에 대한 보편적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권고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관광정책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향유권 문제가 올바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할 당위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객관적 법의 지배를 추구하는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송기춘, 2007). 즉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허영, 2007: 145).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을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자 질서를 유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지향도 국내법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관광향유권 신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범이 이를 잘 수용하고 있는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관광법규에서 ‘장애인 관광’을 논하는 개정은 2007년 이후에 시작되었는데(법제처, 2023), 아직 관광학계에서 국내 관광법규에 나타나는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관한 개정내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광 관련 저변이 국제사회의 지향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학계·업계의 발전에 앞서서, 국내 관광법규는 ‘모두를 위한 관광’이 포함하고 있는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관광법규가 장애인 관광향유권 향상을 위해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개정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과제는 세 가지로 제출한다. 첫째, 장애인 관광향유권 신장을 위한 국내·외 학술연구들과 관광정책을 고찰하고 ‘모두를 위한 관광’을 지향하기 위한 핵심 논점을 정리할 것이다. 둘째, 국내 관광 관련 법규들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관광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고찰하고 분석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광 관련 법규들 각각의 법적 체계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모두를 위한 관광’ 가치 실현을 위한 각 법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과정으로 국내 관광정책·관광 및 한대산업을 개인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민적 관광향유권을 형평성있게 실현하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보편적 접근성 증진에 대한 합의

본 연구는 국내 관광법규가 UNWTO가 채택한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과 맥을 같이하여 발전하도록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관광법규의 개정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 앞서 ‘모두’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에 대한 핵심 논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내·외 학술연구들 및 국내 관광정책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보편적 접근성 증진에 대한 합의를 풀어보고자 한다.

1. 관광환경의 보편성 문제

관광학 분야의 학술자료들은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데(임지은·홍서운, 2023), 이러한 경향은 특히 물리적인 관광환경에 대한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광학계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논의한 초기의 연구들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Smith, 1987; 박승현·이영진, 2011; 이려정, 2012)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이 어려운 현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Darcy, 2010; 김영은·강병근·이건하, 2006; 성기창·채철균, 2003; 신흥재·고영준, 2009; 이성일, 2000; 이영진·송영민, 2011)이 베리어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관광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관광활동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회적 장애모델의 패러다임으로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관광학계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관광환경에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어려우며, 이것이 관광향유권 형평성 문제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한편 Darcy & Dickson(2009)은 관광환경을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당위성과 함께 생애 주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관광객은 일시적으로라도 장애를 가지게 되는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관광 분야에서는 건물의 외형, 시설 등의 물리적인 관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층, 영유아, 임산부 등의 관광향유권도 신장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간의 넓이는 불편 요소로 느끼지 않는 등 모든 장애인에게 항상 일괄적인 기준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보편적 관광환경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임지은·이형룡, 2014)도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관광정책도 사회적 장애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은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에 대해 계획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에 따라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활동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병옥, 2015). 또한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관광환경 접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관광환경 조성’(서울관광재단, 2023)과 경기도의 ‘모두를 위한 무장애 경기관광도시’(경기관광공사, 2023)’ 등은 장애인, 고령층, 영유아, 임산부를 관광약자로 보고 이들에게 불편한 환경을 제거하거나 필수적인 환경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관광 분야는 학문적·정책적으로 관광환경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과거의 관광환경에 장애인을 위한 관광시설을 도입하거나 장애인에게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관광약자가 관광환경에 접근해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사실상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른 관광환경과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환경의 이용대상을 보편화한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른 관광환경이라는 것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서 더 나아가 처음부터 다양한 개개인의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관광객도 접근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기획 및 설계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관광’ 또는 ‘장애인도 가능한 관광’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관광’이라는 표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 없이 어떠한 신체적 조건의 관광객도 관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향점을 가진 적극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위의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보편적 접근성 증진에서 함의하고 있는 관광환경의 보편성이 두 가지 틀을 충족해야한다고 본다. 첫째, 관광객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신체적 조건의 관광객도 접근할 수 있는 관광환경에 대한 지향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과거에 조성한 관광지를 개선하는 것 외에 새로운 관광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모든 신체적 조건의 관광객이 활동할 수 있도록 범용적 관광환경으로 기획 및 설계해야 한다.

2.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학계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대해 논의한 초기의 연구들은 장애

인 관광활동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Smith(1987)는 내재적, 환경적, 상호작용적 어려움을 구분하였고, MeKercher, Packer, Yau, & Lam(2003)은 내재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을 포함한 내부요인과 상호적 제약과 환경적 제약을 포함한 외부요인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들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연구 결과로 제시한 것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제약이 발현되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 요인들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장애인 중심의 관광환경에서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후 장애인 관광향유권은 ‘복지관광(Welfare to urism)’, ‘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 ‘포용관광(Inclusive tourism)’ 등의 개념과 함께 연구 되었으며, 국내 관광학계에서도 장애인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김미숙·김승 권·윤상용·김성희, 2010), 이는 장애인이 교육, 고용, 생활환경에서 비장애인으로부터 차별 받아 온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관광정책도 복지관광을 통하여 장애인 관광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과 아동 대상의 초청관광을 1987년부터 2001년 까지 진행하였고, 관광협회중앙회는 국민관광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정책으로 장애인 관광향유권을 신장하려 하는 것은 장애인이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사회적 선입견을 조장하거나, 또는 장애인 관광향유권 신장을 위한 관광정책의 대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만을 고려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장애인이 상품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라는 점을 강조한 연구(이봉구, 2013)와 장애인은 오히려 많은 소비를 하며 활동하는 ‘고부가가치 고객’이라고 인식하는 연구(조아라, 2019; 한국관광공사, 2014)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광수익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수익성 높은 수요 계층’으로 인식한다면, 비장애인보다 고가의 소비활동을 하는 특정 장애인만 관광수요로 겨냥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장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경을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해석하거나, 한 가지 성향을 대표적으로 해석하여 집단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모든 관광환경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관광환경을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관광환경에 따라 순응적으로 관광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환경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선택되도록 스스로를 개선하는 것이다.

위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을 집단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소득·교육·직무 등의 다양한 인구통계적 지표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분포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전제될 때, 관광산업과 관광시장은 모든 장애인인 비장애인과 같은 보편적 관광활동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관광행동과 관광소비의 선택에 있어서 주체적 관광수요라는 인식이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편적 접근성 증진에서는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위하여 장애인을 특정한 조건의 집단으로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방법

관광 분야에는 사회 전반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장애인 사회활동 보장 법규들 외에도 관광 법규만이 주도적으로 적용되는 영역과 역할이 존재한다. 국내 관광 법규는 관광의 범주 안에서 장애인에 관한 담론들을 국제 수준의 ‘모두를 위한 관광’ 개념에 부합하도록 체계화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내용분석 연구방법론으로 국내 관광 관련 법규들을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연구(Content Analysis Research)는 이미 생산되어 있는 정보를 원래의 형태에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연구방법으로써(Berelson, 1952),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한 정보를 체계화하여 해석하는 분석에 유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 관광법규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제정, 개정, 조항 신설 및 변경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세부적 분석 틀은 위에서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얻은 세 가지 함의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관광법규의 조항들에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얼마나 부합하도록 변화하였는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 1) 관광환경의 보편성 1: 관광객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는 관광환경 지향
- 2) 관광환경의 보편성 2: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범용적 관광환경 기획 및 설계 지향
- 3)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 장애인을 특정한 조건의 집단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지양

2. 연구 대상 및 범위

관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법률로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이 있으며, 이외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관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법률들도 관광 법규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관광 관련 법규들 중 본 연구의 대상은 관광정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진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관련 법령: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이에 해당하며(법제처, 2023), 관광 관련 자치법규 중 관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조례는 각 자치단체의 관광재단, 관광공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과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 육성을 위해 제정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관광 관련 자치법규들 중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 관광 진흥을 위해 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 및 제언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시간적 범위는 2023년 8월로 한정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법령과 자치법규로 정하였다. 따라서 법제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내법 중, 2023년 8월 시점까지 실효성이 있는 법규와 2023년 8월 시점까지 발표된 개정안 중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내용을 전수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표 1>에 제시하였는데, 국내의 법규들은 헌법을 최상위 1단계 계층에 두고 5단계까지 위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위법은 상위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사유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은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김경태, 2008)는 법의 체계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연구의 대상

구분	법명	제정 년도 (개정 횟수)	내용	장애인 관광 관련 조항
법률 (2단계)	관광기본법	1975년 (5회)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정한 법률	없음
	관광진흥법	1976년 (86회)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제2조 11의2호 제34조의3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1972년 (20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	제5조 3항 8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96년 (23회)	국제회의의 유치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법률	없음

구분	법명	제정 년도 (개정 횟수)	내용	장애인 관광 관련 조항
법률 (2단계)	한국관광공사법	1962년 (13회)	한국관광공사의 설립, 사업, 운영,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제12조 1항 2호
명령 (3단계)	관광진흥법 시행령	1976년 (97회)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41조의3
규칙 (4단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976년 (86회)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없음
자치법규 (5단계)	시·군·구 / 시·도 조례	지역에 따라 상이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	지역에 따라 상이함

IV. 분석 결과

1.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연구 대상의 법규 중에서 국내 관광사업의 실정을 총괄하는 관광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은 장애인 관광향유권 신장을 위한 조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 총 6개 조항에 대한 신설·개정 등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첫 번째 조항은 제2조 11의2호이다. 관광진흥법의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 하에 구체적 관광사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2조(정의)에는 법규 내에서 통용하는 용어에 대해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11의2호에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다.

관광진흥법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두 번째 조항은 제34조의3이다. 이 조항은 관광진흥법의 제2장 관광사업 중에서 제5절 유원시설업 부분에 속해있는데, 제34조는 유원시설업의 영업질서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34조의2는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연속으로 제34조의3(장애인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에서는 1항으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의 설치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2항으로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사설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2023년 8월 8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조항은 제47조의3이며, 이 조항은 관광진흥법의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부분에 속해있다. 제47조는 관광정보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이고, 제47조의2는 관광통계, 제47조의3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는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은 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7조의8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에서는 1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 조항은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되어 2023년 3월 21일에 개정되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조항은 위 조항과 연속선에 있는 제47조의4이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항은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다.

관광진흥법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다섯 번째 조항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로써, 2014년 5월 28일에 신설되었다. 본 조항의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5항에서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부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을 살펴보면,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1월 28일에 신설, 2015년 11월 30일에

개정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관광진흥법의 경우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변화는 2014년 5월 28일 및 2023년 3월 21일, 2023년 8월 8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제처는 2014년 5월 28일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관광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수혜대상자의 자격검증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보 제공·활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광복지 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21일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고령자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함이라고 밝혀,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이 제47조의3(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으로 제목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8월 8일의 개정은 국내 관광법규 중 가장 최근의 개정으로써,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다.

더불어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경우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변화는 2014년 11월 28일에 신설되었다. 이때의 개정의 이유는 관광진흥법의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내용은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에 대한 것으로서 “여행이용권이 지급되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나타난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법 조항의 제정·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볼 때, ‘모두를 위한 관광’의 개념에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관광진흥법은 제2장 제5절의 유원시설업에서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유원시설업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 개정 내용은 없으며, 물리적 환경 대상을 ‘장애인’에서 ‘장애인·고령자’로 개정된 이후 추가적 확장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모든 신체적 조건의 다양성을 반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영유아·임산부의 불편함 없는 관광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회 현실에도 미치지 못한 내용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경비를 보호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동등하고 주체적인 소비자로 해석하는 관점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본 연구의 세부 분석 틀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분석 결과

조항	세부 내용	분석 결과
법 제2조 11의2호	관광취약계층을 구분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법 제34조의3	장애인 시설 설치를 권고	관광환경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법 제47조의3	관광취약계층을 구분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법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을 구분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법 제47조의5	관광취약계층을 구분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시행령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을 구분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기금을 설치, 재원, 관리, 회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5조 3항에서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1항에 기금의 대여 용도, 2항에서 경비 출연 및 보조의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면서 9호 및 9의2호까지 총 10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이 중에서 8호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며, 2004년 1월 29일에 개정하였다. 개정의 이유에는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듯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기금은 운용을 위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밝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라는 의미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관광환경에서 장애인이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니다.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귀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장애인 전체 집단을 소외계층의 일부로 치환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특정한 조건의 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것으로써,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표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분석 결과

조항	세부 내용	분석 결과
법 제5조 3항 8호	장애인을 소외계층으로 지칭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3.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은 국제관광공사법으로 1962년 제정된 법률이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로 명칭 변경하면서 법명도 바뀐 것으로 제1조(목적)에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 법은 제12조 1항 2호에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체적인 내용으로 제12조(사업)의 조항은 1항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는데, 2호의라에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을 포함하였다. 본 내용은 2016년 12월 20일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으며, 개정의 이유는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의 이유에 나타나듯이, 한국관광공사법은 관광환경의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시킨 것으로는 한국관광공사법이 ‘모두를 위한 관광’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우리나라 관광지의 개발과 설립·허가·운영 등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않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대상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점은 발전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일환으로써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 공익적 목적에 부응하는 시책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 역시 타 법 조항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체를 관광소외계층의 일부로 치환하여 해석되는 표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본다.

〈표 4〉 한국관광공사법 분석 결과

조항	세부 내용	분석 결과
법 제12조 1항 2호	장애인을 소외계층으로 지칭	관광활동 선택의 보편성을 반영하지 못함

4. 국내 시·군·구 조례 및 시·도 조례법

법제처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내 현행 자치법규 중 장애인 관련 생활, 복지, 인권, 교육, 고용, 교통, 안전 등 전 부문의 조례는 총 3,11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지역주민 외 방문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조례는 171개 지역에서 총 337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조례의 내용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지정 및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설치, 지원,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 내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장애인 관광향유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한 조례는 총 19개 지역에서 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국내 자치법규

자치단체	조례명
경기도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자치단체	조례명
전라남도 전주시	전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위 조례들은 공통적으로 제1조(목적)에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광약자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대부분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명칭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지역은 관광지, 관광 상품, 관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조례에 근거하여 ‘같이가기’라는 무장애 관광사업 브랜드를 운영하고(제주관광정보센터, 2023), 서울특별시는 위 조례에 근거하여 ‘다누림센터’와 같은 전문적 무장애 관광센터를 운영한다(서울관광재단, 2023).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상위의 관광 관련 법규들에 비하여 오히려 사회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세부 분석 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관광환경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조례명에서 관광약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범용적 관광환경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관광 분야의 학계, 업계, 행정 단위들이 장애인 관광향유권 향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 법·제도가 주체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관점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제사회의 지향점인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개념에 관광객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는 관광환경의 보편성,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애초에 범용적으로 기획 및 설계되는 관광환경의 보편성, 장애인을 특정한 조건의 집단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관광활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는 보편성의 세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고, 국내 관광법규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국내 관광법규들의 내용이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내 관광법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사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광향유권 관련 조항을 가장 많이 포함한 법률은 관광진흥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속도와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법률의 같은 실정에 비하여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 무장애 환경, 더 나아가 무장애 관광환경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보편적 대상에 대한 물리적·인적 관광환경 조성을 명시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은 국가의 관광경쟁력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광향유권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이 제2장 관광사업 부문에서 유원시설업 만이 아닌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 편의시설업에서도 장애인 등 모든 신체적 조건의 대상이 접근가능한 물리적 환경 조성 및 인적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국내 관광사업 전반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않는 관광환경의 보편성,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애초에 범용적으로 기획 및 설계되는 관광환경의 보편성, 장애인을 특정한 조건의 집단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관광활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는 보편성 등 ‘모두를 위한 관광’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할 사항은 일관성있고 통합적인 개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광법규들은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들이 각기 다른 계기와 내용으로 장애인 관광향유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다. 더구나 상위법에 비교하면 5단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현실적 변화를 더욱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은 큰 틀에서 법률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전제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상위법인 2단계 법률이 지엽적이고 특수한 자치법규들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용어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관광기본법의 개정 제언을 제출하고자 한다. 관광기본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써, 다른 국내 관광법규들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타 법규들의 규정 내용에 전제되는 ‘기본법’의 위상을 가

진다. 따라서 관광기본법은 실질적인 관광사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내용을 개정하기 보다는 국내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이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 증진에 형평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관광기본법은 제13조에서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며 국민관광의 발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내용에 ‘모두를 위한 관광’에서 의미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면,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지향점을 국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관광정책이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전국민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관광법규가 ‘모두를 위한 관광: 보편적 접근성 증진’개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고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관광 관련 법규 내 장애인 관광향유권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하여 모든 법·제도 각각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제언하는 통합적 연구로써 효율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광향유권의 형평성 가치 실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애와 장애인 관광객에 대한 재해석을 공론화함으로써 국내 관광학계의 편견 해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기관광공사 (2023). 무장애 경기관광. Retrieved May 31, 2023 from <https://bf.ggtour.or.kr/>
- 고미영, 양성수 (2016). 국내 학술지 복지관광 연구동향에 관한 내용분석. 동북아관광연구, 12(4), 181-201.
- 김경태 (2008).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 (27), 65-96.
- 김미숙, 김승권, 윤상용, 김성희 (2010).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66(0), 63-79.
- 김영은, 강병근, 이진하 (2006). 서울시내 관광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2(7), 3-10.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박승현, 이영진 (2011). 장애유형에 따른 관광제약의 차이 분석. 관광연구논총, 23(1), 193-212.
- 법제처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August 14, 2023 from <https://www.law.go.kr/>
- 서울관광재단 (2023). 서울다누림관광. Retrieved May 31, 2023 from <https://www.seouldanurim.net/index>
- 성기창, 채철균 (2003).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9(2), 43-50.
- 송기춘 (2007).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35(4), 297-335.
- 신홍재, 고영준 (2009). 교통시설에서 사회적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u-IT기술 적용사례 연구. 디자인학연구, 22(4), 41-50.
- 이려정 (2012). 장애인 관광활동의 제약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개인특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3), 169-187.
- 이성일 (2000).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보편적 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26(4), 402-410.
- 이영진, 송영민 (2011). 장애인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변 관광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복·지체부자유연구, 54(4), 349-374.
- 임지은 (2018). 현대산업 종사자의 장애인 고객에 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연구, 40, 127-144.
- 임지은, 이형룡 (2014). 장애인 관광객을 고려한 관광자원 물리적 환경의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

- 구. 관광학연구, 38(9), 193-214.
- 임지은, 홍서운 (2023).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은 무엇인가?: 전문가 조사를 활용한 개념분석 연구. 관광연구논총, 35(1), 93-124.
- 정병옥 (2015).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얼린 관광 지]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관광정책, 60, 86-92.
- 제주관광정보센터 (2022). 같이가치 제주여행. Retrieved May 31, 2023 from https://www.visitjeju.net/kr/tourInfo/able?tap=five&menuId=DOM_200000000010740#p1&pageSize=9&sortListType=title_kr&viewType=thumb
- 조아라 (2019). ‘모두를 위한 관광’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관광정책, 75, 46-51.
- 허영 (2007). 『한국헌법론』, 박영사.
- Berelson, B.(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New York: Hafner.
- Chung, B., Goldschmidt, G., & Hoffman, K. (2004). Customer and employee views of critical service incident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8(4), 241-254.
- Darch, S.(2010). Inherent complexity: Disability, accessible tourism and accommodation information preferences. *Tourism Management*, 31, 816-826.
- Darcy, S., & Dickson, T. J. (2009). A whole-of-life approach to tourism: the case for accessible tourism experience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16, 32-44.
- EU. (1997). Treaty of Amsterdam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 Retrieved October 18, 2022 from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11997D%2FTXT>
- Lim, J., & Park, K. (2022). Service orientation to customers with disabilities after managerial seminars on disability inclusion.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8(6), 117-122.
- Nicolaisen, J., Blichfeldt, B. S., & Sonnenschein, F. (2012). Medical and social models of disability: a tourism providers' perspective. *World Leisure Journal*, 54(3), 201-214.

- Smith, R.(1987). Leisure of tourist with a disability: Barriers to trav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376-389.
- UNWTO. (1980). Manila declaration on world tourism. https://scholar.google.com/scholar_lookup?hl=en&publication_year=1980&author=WTO&title=Manila+declaration+on+world+tourism
- UNWTO. (1999).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t its thirteenth session. Retrieved October 18, 2022j from <https://www.unwto.org/archive/global/event/general-assembly-thirteenth-session>
- UNWTO. (2015). Recommendation on accessible tourism for all. Retrieved October 18, 2022 from <https://www.unwto.org/archive/global/publication/unwto-recommendations-accessible-tourism-all>
- UNWTO. (2016). 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 Retrieved October 18, 2022 from <https://www.unwto.org/world-tourism-day-2016>

원고접수 : 2023. 9. 8.	수정원고접수 : 2023. 10. 30.	게재확정 : 2023. 11. 29.
--------------------	------------------------	----------------------

Abstract

“Tourism for All–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 and Improvement of Tourism Regulat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Concept of Promoting Universal Accessibility

JeeEun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tegrated development direction by considering the changed process to improve the right to enjoy tourism for the disabled, believing that domestic tourism-related legal systems should reflect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ursuing "tourism for all" in terms of the universality of the tourism environment and the universality of tourism activity choic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data and domestic tourism policies. In addition, all of the contents mentioned in domestic tourism laws on the right to enjoy tourism for the disabled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meaning of "tourism for all" was refle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x provisions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e Tourism Promotion Act, one provision of the Tourism Promotion Development Fund Act, one provision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t, and 19 municipal ordinances of 19 local governments were presented.

Keywords : Tourism for all, accessible tourism, tourism rights for the disabled, tourism regulations

* Ph.D., College of Hospitality & Tourism, Sejong University4

